

FY2023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

2025. 7. 10.



감사인감리국

I 개 요

- 新「외부감사법」에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도입
 - 금감원은 한국회계학회의 연구용역,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마련한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*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
 - * 계량지표 23개(총 65점), 비계량지표 11개(총 35점)로 구성
 -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를 회계감독에 활용함으로써 감사인이 스스로 품질관리수준을 제고하도록 유도

II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운영

- ① (평가대상)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(「외감규정」 §23⑧)
- ② (평가기준)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은 감리집행기관이 정하고, 평가기준 제·개정시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(「외감규정」 §23⑨⑩)
 - ※ 평가결과 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금감원장이 별도로 정함(「외감세칙」 §7의2②)
- ③ (제출기한)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매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품질관리수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(「외감규정」 §23⑨⑩)
- ④ (평가실시) 품질관리 수준평가 중 계량평가는 매년 실시하고, 비계량평가는 감사인감리 등을 통하여 실시(「외감세칙」 §7의2③)
- ⑤ (결과보고) 감리집행기관은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가 연도의 다음해 1월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(「외감규정」 §40④)
- ⑥ (결과활용) 감리대상 선정시 활용*, 감사인점수 반영**, 회계법인 취약 분야 파악 등에 활용

* 감리집행기관이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인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(「외감세칙」 §23⑥ VI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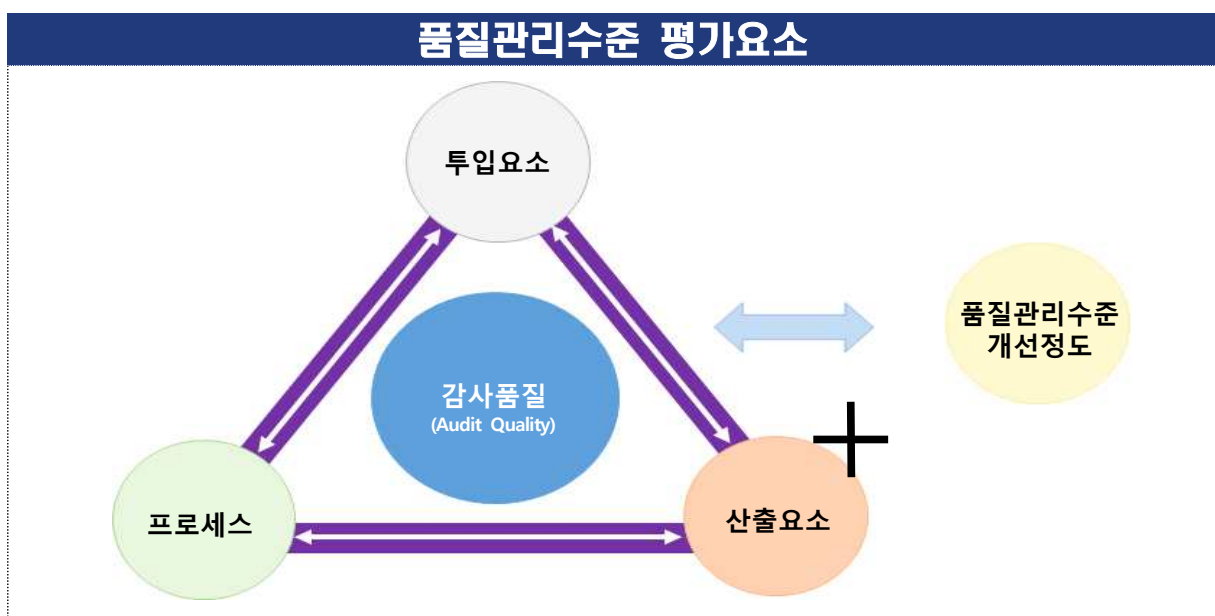
** 상위 15%(6사, 100점 환산점수 85점 이상) : 10% 가산, 상위 15~30%(6사, 100점 환산점수 80점 이상) : 5% 가산(「외감규정」 별표3 2.마.)

Ⅲ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

1 품질관리수준 평가요소

- 감사인의 회계감사 품질*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, 프로세스, 산출요소, 품질관리수준 개선정도 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수준을 평가

*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(IAASB)의 감사품질 개념체계의 구성요소(투입요소, 프로세스, 산출요소)를 참고하여 평가요소 결정



- **(투입요소)** 감사인의 적격성(경험 등), 객관성(독립성 등), 가용성(인력·시간 등) 등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 평가(역량지표)
- **(프로세스)** 감사인의 품질관리 설계·운영에 대한 유효성 평가(역량지표)
- **(산출요소)** 품질관리제도의 설계·운영에서 나타난 재무제표 심사·감리결과, 재무제표 재작성 빈도, 감사인 감리결과로 평가(상태지표)
- **(품질관리수준 개선정도)**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이행 여부,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개선 정도 등으로 평가(동태지표)

◆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은 계량지표 23개(총 65점)와 비계량지표 11개(총 35점)로 구성

□ (계량지표) 「품질관리기준서1」에서 요구하고 있는 6대요소*별 핵심사항, 재무제표 및 감사인 감리결과, 품질관리 개선정도 등을 반영

* 리더십 책임, 윤리적 요구사항, 업무 수용·유지, 인적자원, 업무의 수행, 모니터링

○ ‘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’ 등 역량지표 16개(투입), ‘감사인 감리결과’ 등 상태지표 5개(산출), ‘개선권고사항 이행 소홀 및 미이행’ 등 동태지표 2개(품질관리수준 개선정도)로 총 23개

계량지표 예시

평가지표	선정사유	평가방법
1.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		
1-① (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)	· 품질관리제도를 구축·운영하고, 품질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규모는 감사품질에 영향	$= \frac{\text{품질관리 전담인력 수}}{\text{감사인 등록요건 최소 기준}}$

□ (비계량지표) 「품질관리기준서1」에서 요구하고 있는 6대요소별 핵심사항*,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발생 빈도 등을 반영

* 품질관리기준서의 핵심내용 등을 잠재적인 품질위험으로 전환하여 기술

○ ‘품질지향 내부분화를 위한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’ 등 역량지표 9개(프로세스), ‘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발생원인’ 등 상태지표 2개(산출)로 총 11개

비계량지표 예시

평가지표	세부 항목(잠재적 품질위험)
1.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	
1-③ (품질지향 내부분화를 위한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)	· 1-③-1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이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. · 1-③-2 감사인이 구축한 품질관리 보상체계에 불구하고 영업성과 등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결정된다. 등

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및 배점

◆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은 계량지표 23개(총 65점)와 비계량지표 11개(총 35점)로 구성

구 분	평가항목	배 점	
		계량	비계량
<역량지표>		40	31
1.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(10점)	1-①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	3	-
	1-②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업무부담	3	-
	1-③ 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	-	4
2. 관련 윤리적 요구 사항 (12점)	2-① 독립성 담당인력 비중	3	-
	2-② 독립성 위반	3	-
	2-③ 윤리기준 위반	1	-
	2-④ 독립성·윤리기준 점검 시스템 설계 및 운영	-	5
3.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(8점)	3-① 위험평가 사전검토 비율	2	-
	3-② 회계감사업무 매출액 비중	2	-
	3-③ 사전위험평가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	-	4
4. 인적자원(13점)	4-①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교육훈련	3	-
	4-② 감사인력 유지율	2	-
	4-③ 소속 공인회계사의 업무부담	2	-
	4-④ 인적자원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	-	2
	4-⑤ 업무시간 관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	-	4
5. 업무의 수행(20점)	5-① 업무수행이사의 입증감사 전 투입시간	3	-
	5-② 사전심리시간	3	-
	5-③ 사전심리 담당자의 입증감사 전 투입시간	3	-
	5-④ 전문가 활용	3	-
	5-⑤ 지시, 감독, 검토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	-	3
	5-⑥ 사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	-	3
	5-⑦ 감사조서 관리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	-	2
6. 모니터링(8점)	6-① 사후심리시간	2	-
	6-② 전체 감사대상회사 대비 사후심리 비율	2	-
	6-③ 사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	-	4
<상태지표>		19	4
7. 감리결과 등(23점)	7-① 금감원의 재무제표 등 심사·감리결과	5	-
	7-② 한공회의 재무제표 등 심사·감리결과	2	-
	7-③ 재무제표 재작성 등 빈도	4	-
	7-④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	4	-
	7-⑤ 개별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	4	-
	7-⑥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발생원인(품질관리시스템)	-	2
	7-⑦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발생원인(개별감사업무)	-	2
<동태지표>		6	-
8. 감사품질 개선정도(6점)	8-① 개선권고사항 이행 소홀 및 미이행	3	-
	8-②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및 개선정도	3	-
합 계		65	35
		100	

IV FY2023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

['23사업연도 품질관리수준 평가 개요]

- **(대상 회계법인)**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등록된 회계법인*(상장사 등록감사인)
* 계량지표는 전체 41사, 비계량지표는 '23년 중 감사인감리를 수행한 14사에 대해 평가
- **(대상 사업연도)** 회계법인의 '23사업연도('23년 중 개시한 사업연도)
- **(평가항목)** 계량지표 23개(65점 배점) 및 비계량지표 11개(35점 배점) 항목

1 계량평가 결과

◆ **41개 법인의 평균점수는 55.1점(총점 65점, 전년비 1.6점 ↑)이며, 대형 회계법인 뿐 아니라 중소형 회계법인도 품질관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경우 높은 평가**

□ **(개요)** 전년 대비 평균점수(53.5→55.1점, 1.6점 ↑), 최고점(58.5→60.3점, 1.8점 ↑) 및 최하점(47.1→48.6점, 1.5점 ↑)이 모두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이 개선

○ 과거 2차례의 자체 Pilot Test('19~'20사업연도)를 포함하여 금번이 5번째 평가로, 그 간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개선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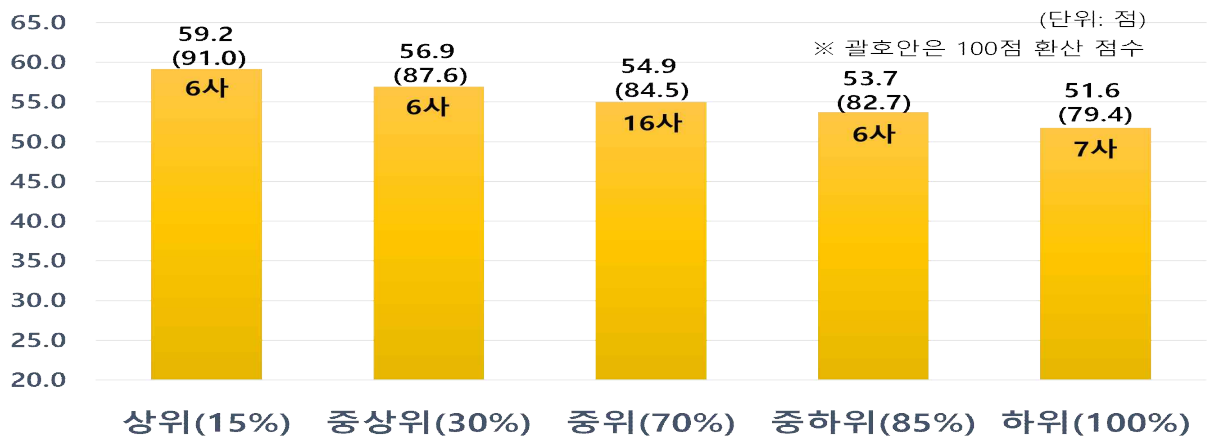
□ **(평가결과)** 상위 6사(15% 이내) 평균점수는 59.2점, 중상위 6사(15%~30%) 평균점수는 56.9점으로, 동 12사는 인센티브 부여대상(평가점수 상위 30%)

○ 회계법인 규모가 클수록 평가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으나, 대형 회계법인 뿐 아니라 품질관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투입*한 중소형 회계법인들도 인센티브 부여대상에 포함되었고,

* 다른 중소형 법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교육훈련 시간, 사전심리 담당자의 입증감사전 투입시간 등이 높음

-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회계법인 중에도 많은 법인들이 중위 이하에 포함되어 품질관리에 대한 투자·관심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

계량평가 결과(평가등급*별 평균점수)



* 상위(15%이내), 중상위(15%~30%), 중위(30%~70%), 중하위(70%~85%) 및 하위(85%초과)로 평가등급을 5개로 구분

- **(개선항목)** 품질관리 전담인력 업무부담, 업무수행 이사의 입증 감사 전 투입시간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,
 -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, 독립성 담당인력 비중, 사전심리시간 등은 전기대비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
- **(미흡항목)** 중소형 법인들은 외부감사시 IT·가치평가 등 관련 내부 전문가 활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였으며,
 - 기말감사 전 품질관리 검토 시간, 소속 회계사 교육 훈련 시간 등은 법인 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

주요 미흡사례

- ✓ 내부 IT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감사대상 회사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, 회계처리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 검증 등이 충분히 수행되지 못할 가능성
- ✓ 감사위험 평가 및 감사계획 등에 대한 법인 차원(사전심리 담당자)의 사전 검토가 부족하여 일관된 품질관리가 수행되지 못할 가능성
- ✓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교육 훈련이 부족하여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의존한 외부감사가 수행될 가능성

◆ **14개 법인의 평균점수는 29.6점(총점 35점, 전년과 동일)이며, 감사 업무의 독립성 점검, 인적자원, 감사조서 등과 관련된 정책·절차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법인들이 높은 평가**

□ **(개요)** 전년 대비 평균점수(29.6점)이 동일하며, 감사인감리 지적 사항이 적은 법인일수록 비계량평가 점수가 높음*

* 비계량지표 평가요소는 품질관리기준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구성되어,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감사인감리와 비계량평가 결과가 밀접한 관계를 보임

※ 다만, 비계량평가는 매년 금융감독원이 감사인감리를 수행한 법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함에 따라 전기와 평가 대상 법인이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

□ **(미흡항목)** 대부분의 법인에서 감사업무의 독립성 점검 관련 일부 미흡사항이 발견되었고, 동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법인과 나머지 법인 간 차이도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

- 그 외 항목의 경우 품질 지향 내분문화를 위한 성과보상 및 통합 인력 관리 측면의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
-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들의 경우 다른 법인들에 비해 주로 리더십 책임, 독립성 점검, 업무의 배정, 사후심리 등과 관련된 내부 정책과 절차가 미흡

주요 미흡사례

- ✓ 감사품질보다는 영업성과 등에 따라 성과급, 승진 등 실질적인 보상수준이 결정되는 등 감사품질을 우선하는 내분문화가 미흡
- ✓ 내부 구성원이 주식거래, 고용관계 등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신고를 누락 또는 지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
- ✓ 감사업무 참여자의 독립성 준수 여부가 감사업무 참여 전에 완전하게 확인 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한 정책과 절차가 미흡
- ✓ 업무수행이사 배정 시 적격성 및 품질관리요소를 감안하지 않거나, 배정 기준 및 근거에 대한 문서화가 미흡
- ✓ 사후심리 결과 미흡사항의 중요도별 처리 기준이 불분명하거나, 미흡사항 보완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

- **(유의사항)** 계량평가 결과 상위 30% 해당 법인(12사)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시 인센티브(감사인점수 가산*)를 부여하여 더 많은 지정 감사 기회를 제공받게 되고,
 - * 상위 15%(6사, 100점 환산점수 85점 이상) : 10% 가산, 상위 15~30%(6사, 100점 환산점수 80점 이상) : 5% 가산
- 감사인감리 결과 품질관리기준 미준수시 감사인점수를 차감*하게 되는 바,
 - * 업무설계가 구축되지 않거나 운영되지 않은 경우 2%, 일부 구축되지 않거나 운영되지 않은 경우 1% 차감
 -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수준 제고가 회계법인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,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·투자 확대 등 품질관리수준 개선 노력이 필요
- **(향후 계획)** 한공회 및 회계법인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집하고,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